

간이세율(제96조 관련)

| 품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율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. 투전기,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, 수렵용 총포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. 보석·진주·별갑·산호·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, 귀 금속 제품, 고급 시계,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| 37만 400원 +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|
| 다. 녹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라. 방향용 화장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마. 로얄제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바. 전기냉장고, 전기냉방기, 전기세탁기, 텔레비전수상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수리선박(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. 모피의류,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.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,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, 신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. 다만, 고급모피와 그 제품, 고급용단, 고급가구, 승용자동차,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.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.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.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 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(녹용 및 방향용 화장품을 제외한다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